

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제출자 : 구미시청

1. 제안이유

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,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을 안정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
- 2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
- 3)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4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다. 위탁사무

- 1)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, 관리
- 2) 배치기관 발굴·협약 및 참여자 직무 배치, 사업운영 전반

라. 위탁기간 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* 2027. 1. ~ 2029. 12.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491,100천원 * 2027년 예산 기준

(단위: 천원)

계	인건비	퇴직금	운영비	비고
491,100	405,600	38,700	46,800	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6년 제2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3. 부서의견

-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「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」 지침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.
-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참여자를 요양기관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,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이에 장애인일자리 채용 및 채용인력 관리, 자원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
- (2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
- (3)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- (4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다.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

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
1. 평가개요

- 기 간 : 2026. 4. 15.(수) ~ 17.(금)
- 대 상
(위탁기관) 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
(대상사업)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
- 평 가 자 : 3명(장애인복지과장, 장애인지원팀장, 담당자)
- 평가방법 :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한 서면평가
- 위탁기간 : '24. 1. 1. ~ '26. 12. 31.(3년간)
- 사업내용 : 요양기관 내 요양보호사 보조 업무(식사보조, 보행보조, 환경정비 등)
- 평가지표 :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
 - 공통분야(40) : 사업계획(10), 인력관리(10), 예산관리(10), 성과관리(10)
 - 개별분야(60) : 전문성(15), 자원관리(15), 사업실적(15), 만족도(15)
 - 감 점(-5) : 임금체불 및 지도점검 개선사항 이행여부 등(-5), 경고(-3), 주의(-1)

부분	공통분야(40점)				개별분야(60점)				감점 요소	총점
평가항목	사업계획	인력관리	예산관리	성과관리	전문성	자원관리	사업실적	만족도	감사 결과	
배점	10	10	10	10	15	15	15	15		100
평점	8	8	8	10	15	15	12	12		88

2. 평가결과

- 평가점수 : 88점(우수)
- 총 평
 - 수행기관이 확보한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, 요양기관과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함.
 - 배치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참여자의 선택권 확대 및 민간취업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직업상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

2025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

1. 감사개요

- 위탁사무 :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
- 감사기간 : 2026. 4. 24.(금) ~ 5. 7.(목)
- 감사범위 : 2025. 8 ~ 2026. 4. 위탁업무 관리·운영실태 전반
- 감 사 반 :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외 1명
- 감사방법 : 실지감사(서류 및 시설 확인 현지방문 점검)

2. 감사결과

- 지적사항 : 없음
- 감사내용 : 지침 준수하여 사업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- 제21조(직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-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(위탁·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.

1. 사회복지시설
2. 비영리민간단체
3. 특수교육관련기관

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「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」 지침과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·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1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시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 참여자 인건비·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소요 발생
-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재정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 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출	○ 인건비	405,600	584,640	774,360	1,764,600
	○ 퇴직금	38,700	55,825	73,935	168,460
	○ 운영비	46,800	67,200	89,100	203,100
	소계(b)	491,100	707,665	937,395	2,136,16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 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 비		245,550	353,832	468,698	1,068,080
도 비		73,665	106,150	140,609	320,424
시 비		171,885	247,683	328,088	747,656
민 간		-	-	-	-
기 타		-	-	-	-
합 계		491,100	707,665	937,395	2,136,16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보건복지부 본예산 확정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매년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유지현(☎480-5168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연도	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	합 계	2,136,160	
2027	소 계	491,100	
	인 건 비	405,600	· 1,352천원 × 25명 × 12월 = 405,600천원
	퇴 직 금	38,700	· 1,548천원 × 25명 × 1월 = 38,700천원
	운 영 비	46,800	· 156천원 × 25명 × 12월 = 46,800천원
2028	소 계	707,665	
	인 건 비	584,640	· 1,392천원 × 35명 × 12월 = 584,640천원
	퇴 직 금	55,825	· 1,595천원 × 35명 × 1월 = 55,825천원
	운 영 비	67,200	· 160천원 × 35명 × 12월 = 67,200천원
2029	소 계	937,395	
	인 건 비	774,360	· 1,434천원 × 45명 × 12월 = 774,360천원
	퇴 직 금	73,935	· 1,643천원 × 45명 × 1월 = 73,935천원
	운 영 비	89,100	· 165천원 × 45명 × 12월 = 89,100천원

소 관 부 서		장애인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박 연 길
	팀 장	신 미 현
	담 당 자	유 지 현 (480-5168)